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인천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인천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인천세관에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통관국·심사국”을 “인천공항세관에 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우편통관국”으로, “둔다”를 “두며, 인천세관에 통관감시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통관감시국장, 공항통관감시국장”을 “통관감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및 제14호에 따른 사항(인천공항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송통관국장”을 “특송우편통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급탁송물품”을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특급탁송수입물품”을 각각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특급탁송물품”을 각각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급탁송수입물품”을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46명”을 “45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09”를 “4,907”로 하고, 일반직 계 “4,909”를 “4,9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44”를 “4,542”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의 조직란 및 같은 목 4)의 조직란 중 “인천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

관 · 서울세관 · 부산세관 · 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 · 서울세관 · 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 · 서울세관 · 부산세관 · 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 ·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 ·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 · 서울 · 부산”를 “인천공항 · 서울 · 부산 · 인천”으로 한다.

[별표 1]

세관의 명칭 및 위치(제22조제1항 관련)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세관	서울특별시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세관	인천광역시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세관	대구광역시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세관	광주광역시	울산세관	울산광역시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김포공항세관	서울특별시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속초세관	강원도 속초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동해세관	강원도 동해시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목포세관	전라남도 영암군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대전세관	대전광역시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군산세관	전라북도 군산시
김해공항세관	부산광역시	제주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당세관	부산광역시	전주세관	전라북도 전주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 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 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에도 불구하고 <u>인천세관장 · 서 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대구세 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 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 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④ · ⑤ (생 략)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인천공항세관장 ·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인천 세관장</u> ----- ----- ----- ----- -----.
제23조(세관장) ① (생 략) ② <u>인천세관장 · 서울세관장 · 부산세관장 · 대구세관장 및 광 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성남세 관장 · 파주세관장 · 경남서부세 관장 · 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 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u>	제23조(세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인천공항세관장 · 서울세관 장 · 부산세관장 · 인천세관장</u> -- ----- ----- ----- ----- -----

으로 보한다. 다만,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천세관에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서울세관에 통관국·심사1국·심사2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감시국·신항통관감시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삭제

⑤ 항만통관감시국장, 공항통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천공항세관에 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우편통관국 -----

----- 두며, 인천세관에 통관감시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 -----
----.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⑤ 통관감시국장 -----

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⑥ ~ ⑨ (생략)

⑩ 특송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

1. (현행과 같음)

2.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및 제14호에 따른 사항(인천공항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특송우편통관국장-----
-----.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

4. <u>특급택송물품</u> 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4. <u>특급택송물품 및 국제우편물</u> ----- --
5. <u>특급택송물품</u> 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5. <u>특급택송물품 및 국제우편물</u> ----- ----- --
6. <u>특급택송수입물품</u>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u>특급택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u>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46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 <u>45명</u>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09</u>	<u>4,907</u>	-2
일반직 계	<u>4,909</u>	<u>4,90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44</u>	<u>4,542</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